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298

발의연월일: 2025. 2. 20.

발 의 자:이상휘・박상웅・이헌승

최수진 · 김정재 · 김태호

김성원 • 박대출 • 임이자

신성범 • 박준태 • 박성훈

김장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자,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그런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기한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송·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법률 제 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 링으로 정하는 방송·통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	제10조(결격사유)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	2
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u>3년</u>	<u>5년</u>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	5
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u>3년</u>	<u>5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	6
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	
실한 날부터 <u>3년</u> 이 지나지 아	<u>5년</u>
니한 사람	
<u><신 설></u>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통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